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법률 제19325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6항 본문 중 “오후 6시 30분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으며”를 “오후 6시 30분(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 30분)에 열고 오후 7시 30분(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9시 30분)에 닫으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오후 6시 전에도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에서”를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에서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투표소에서 오후 8시) 전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선거일 오후 6시”를 각각 “선거일 오후 7시 30분”으로”를 ““선거일 오후 6시”는 각각 “선거일 오후 7시 30분”으로, “오후 8시”는 각각 “오후 9시 30분”으로”로 한다.

제218조의16제3항 중 “제218조의17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를 “제218조의13제1항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등재된 사람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귀국한 때에는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8조의16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궐선거 등에서 격리자 등의 투표시간을 오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로 정함으로써 격리자 등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일반 선거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재외선거인 등의 선거권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등재된 사람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귀국한 경우 선거일에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